

사. 특별 지원금(자치기구지원비) 신청 및 산정 방식 안내의 안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칙

제2장 지원금

제2절 특별 지원금

제7조(특별 지원금의 산정)

특별 지원금의 지급 여부, 금액의 규모, 지급 대상, 지급 시기, 기타 특별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제8조(특별 지원금의 지급 등)

① 특별 지원금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공영사업비: 동아리박람회, 동아리대표자워크숍,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기타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적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
2. 특별활동지원비: 회원 전체의 공익을 위한 활동이나 의미 있는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
3. 자치기구지원비: 자치기구가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학교 밖의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는데에 지원하는 비용

② 자치기구지원비는 자치기구의 산정에 의해 지급한다.

특별 지원금(자치기구지원비) 신청과 관련하여 총동아리연합회장이 드리는 당부의 말씀

1) 동아리가 신청 가능한 특별 지원금은 오직 자치기구지원비뿐입니다.

- 공영사업비의 경우 그 주체가 집행위원회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로 신청할 시 당연히 기각입니다.
- 특별활동지원비는 신청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8조 제2항의 반대해석에 따라 특별활동지원비(와 공영사업비)는 자치기구가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동아리운영위원회가 임의로 산정해야하는 어려움, 이로 인해 각 동아리가 얻는 난감함도 있습니다.
- 자치기구지원비는 그 목적 자체로 자치기구, 즉 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 지원금 항목입니다. 이 항목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금 액수를 현실적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 만원, 천 만원 단위가 넘어가는 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 추천드리는 방향은, 정기 지원금 액수와 비슷하거나 살짝 낮게 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 지원금 안건의 상정은 기본적으로 동아리운영위원을 설득하는 과정이며, 또한 직접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근거가 충분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 따라서 증빙자료가 꼼꼼해야 합니다. 가격표, 영수증, 매출전표, 견적서 등 예상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4) 지원금 액수를 명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약 20만원’ 과 ‘197,000원’ 은 다릅니다. ‘대략’ 의 범위는 추상적이므로 이를 확정하는 것이 어려우며 또한 소모적입니다. 명확하게 후자와 같이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 항목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산정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짜리 상품을 기재하고 ‘일부에 대해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가 아닌, ‘총액 중 40%에 해당하는 20만원에 대해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와 같이 명확히 액수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